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연월일	2022. 6.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2. 6.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사임 대상 기관을 추가하고, 겸직사임 대상 사임권고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겸직사임 대상 기관 추가(안 제8조제1항)
- 겸직사임 않을 시 사임권고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안 제8조제2항)
- 올바른 띄어쓰기 및 용어 수정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제6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윤리실 천규범”을 “윤리실천규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를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등에”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시의원”을 “의원”으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원은 구미시 및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의원”을 각각 “의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겸직 금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령에 따라 구미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시의원”을 각각 “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u>윤리실천규범</u>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 ----- ----- <u>윤리실천규범</u> ----- -----.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u>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u>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u>의원</u> -----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생략)	제4조(윤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u>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u> 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u>의원의 윤리심사 등에</u> ----- -----.
제5조(겸직신고) ① ~ ③ (생략)	제5조(겸직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u>시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	<삭 제>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u>시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u> 공개하여야 한다.	④ ----- <u>의원</u> ----- ----- ----- <u>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u>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신설>

(생략)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시의원은 구미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구미시 및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

-----.

② 의원-----

-----.

제8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 3. (생략)

<신설>

② 의장은 시의원이 제1항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시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
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
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법령에 따라 구미시장의 인
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
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
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
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
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9조(징계 등) ① 의원-----

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 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시의원이</u> 구미시 및 공공단 체와 영리목적 거래	4. <u>의원</u> ----- -----
5. <u>시의원이</u> 구미시와 계약체결	5. <u>의원</u>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